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683
----------	-------

발의연월일 : 2025. 10. 23.

발 의 자 : 배현진 · 우재준 · 한지아
박정훈 · 고동진 · 안상훈
박정하 · 유용원 · 정성국
김소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국내에 법인을 두지 않은 채 영화 및 비디오물 서비스를 제공하는 OTT 사업자가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사업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등급 분류 의무나 불법비디오물 유통 방지 의무 등의 규제를 이행하지 않아, 국내 사업자와의 형평성 논란, 이용자 보호 공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영화업자 또는 비디오물영업자 중 일정 규모 이상인 자에게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여, 등급분류의 이행과 불법비디오물 판매 등의 금지 의무를 대리 수행하게 하여 이용자 보호 및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도모하고자함(안 제 92조의2 신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에 제9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2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영화업자 또는 비디오물영업자로서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29조에 따른 상영등급분류의 이행
 2. 제50조에 따른 등급분류의 이행
 3. 제53조에 따른 불법비디오물의 판매 등의 금지 의무 이행
- ② 국내 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영화업자 또는 비디오물영업자가 작성하는 약관에 포함하여야 한다.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 ④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영화업자 또는 비디오물영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 ⑤ 국내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영화업자 또는 비디오물영업자와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92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①</u> <u>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u> <u>는 영화업자 또는 비디오물영</u> <u>업자로서 매출액 등을 고려하</u> <u>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u> <u>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u> <u>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u> <u>“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u> <u>으로 지정하여야 한다.</u> <u>1. 제29조에 따른 상영등급분류</u> <u>의 이행</u> <u>2. 제50조에 따른 등급분류의</u> <u>이행</u> <u>3. 제53조에 따른 불법비디오물</u> <u>의 판매 등의 금지 의무 이행</u> <u>② 국내 대리인은 국내에 주소</u> <u>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u> <u>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u> <u>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u> <u>사항을 「약관의 규제에 관한</u> <u>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영</u> <u>화업자 또는 비디오물영업자가</u> <u>작성하는 약관에 포함하여야</u>

한다.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④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영화업자 또는 비디오물영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⑤ 국내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영화업자 또는 비디오물영업자와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